

『光國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A Study on Gwang-Kuk Wonjong Gongsin-Nokgwon

송 일 기(Il-Gie Song)*
진 나 영(Na-Young Jin)**

〈 목 차 〉

I. 緒 論	2. 形態 分析
II. 『光國原從功臣錄券』의 頒賜事由 및 受給者	3. 體制 分析
1. 頒賜事由	IV. 『光國原從功臣錄券』의 內容 分析
2. 受給者	1. 等級別 分析
III. 『光國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分析	2. 身分別 分析
1. 現存本 現況	V. 結 論

초 록

『광국원종공신녹권(光國原從功臣錄券)』은 선조가 1591년 조선 왕실의 종계변무(宗系辨謠)에 공을 세운 신하들을 광국원종공신으로 책봉한 후 반사(頒賜)한 책이다. 이 연구는 현존하는 재주갑인자(再鑄甲寅字)인 경진자(庚辰字)로 인출된 『광국원종공신녹권』 4책을 대상으로, 녹권이 반사된 사유 및 경위를 알아본다. 녹권의 형태와 그 체제를 자세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녹권에 기재된 공신들을 각 등급별로 나누어 책봉된 공신들의 직함과 그들의 신분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광국원종공신녹권』은 경진자로 찍은 금속활자본으로 크게 권수(卷首) · 본문(本文) · 권말(卷末)의 3부분의 체계로 구성되었다. 또한 354개의 직함에 모두 872명(1등 137명, 2등 136명, 3등 599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직함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었으며 1등원종공신 직함의 품계가 2등과 3등에 비해 높았다. 문관이 무관에 비해 많았다. 그리고 원종공신들을 4개의 신분(身分)으로 분석한 결과, 다양한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양반 748명, 중인 103명, 양인 13명, 천인 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양반이 원종공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키워드: 光國原從功臣錄券, 原從功臣錄券, 광국공신, 광국원종공신, 재주갑인자, 경진자, 종계변무

ABSTRACT

Gwang-Kuk Wonjong Gongsin-Nokgwon(光國原從功臣錄券) is a book which recorded the titles of position and the names of retainers who corrected the Chosun dynasty's genealogy. This study aims to research into existing 4 books of *Gwang-Kuk Wonjong Gongsin-Nokgwon*, which were to analyze the reasons of grant, structure and forms, the characteristics of meritorious retainers' official positions and social status. As the result, *Gwang-Kuk Wonjong Gongsin-Nokgwon* is the metal typologic book which was made up Jaeju-Gapin(再鑄甲寅) letter type. The structure of the *Gwang-Kuk Wonjong Gongsin-Nokgwon* was composed of the beginning(卷首) · the body(本文) · the end(卷末). *Gwang-Kuk Wonjong* meritorious retainers formed the total of 872 persons(1st grade: 137 persons, 2nd grade: 136 persons, 3rd grade: 599 persons) with 354 official titles. Also an analysis of their social status confirmed that 872 persons were "Yang-ban(兩班)" which constituted the largest group(748 persons : 85.8%), "Jung-in(中人)" were second group(103 persons : 11.8%), "Yang-in(良人)" were 13 persons(1.5%) and "Chun-in(賤人)" were 8 persons(0.9%).

Keywords: *Gwang-Kuk Wonjong Gongsin-Nokgwon*, *Wonjong Gongsin-Nokgwon*, *Gwang-Kuk Gongsin*, *Gwang-Kuk Gongsin*, *Jaeju-Gapin Letter Type*, *Gyung-Jin Letter Type*, *Correcing the Chosun Dynasty'S Genealogy*

* 중앙대학교 문현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현정보학과 박사과정(jny415@naver.com) (공동저자)

• 접수일: 2010년 11월 24일 • 최초심사일: 2010년 12월 7일 • 최종심사일: 2010년 12월 24일

I. 緒 論

공신(功臣)은 국가나 왕실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칭호 또는 그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은 공신을 책봉(冊封)하는 등의 공신제도는 중국에서 행해지던 것을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에 수용하여 고려시대에도 이어졌다.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을 통해 당시 공신 책봉 및 녹권(錄券)의 반사(頒賜)가 행해짐과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는 녹권이 일정한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체제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정착되어, 태조(太祖) 때 개국공신(開國功臣) 책봉을 시작으로 영조(英祖) 때의 분무공신(奮武功臣)까지 모두 28차례의 공신(功臣) 책봉이 있었다. 조선의 공신제도는 정공신(正功臣)과 원종공신(原從功臣)을 각각 책봉하고, 공신임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왕의 하명에 따라 공신녹권(功臣錄券)을 반사하였다. 특히 원종공신에게 내린 『원종 공신녹권(原從功臣錄券)』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기타 문헌에도 그 기록된 바가 많지 않아 알 수 없었던 원종공신의 책봉과 관련된 사실뿐만 아니라 당시의 역사적 사실 및 시기별 녹권을 비롯한 조선시대에 간행된 서적의 서지적인 특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 대상 자료인 『광국원종공신녹권(光國原從功臣錄券)』은 조선시대에 종실의 계통을 바로잡는 데 공을 세워 책봉된 광국원종공신들에게 선조가 동왕 24(1591)년에 반사한 것으로, 조선시대에 발급되어 현존하는 21종의 원종공신녹권 중 재주갑인자(再鑄甲寅字)로 인출된 금속활자본은 『광국원종공신녹권』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광국공신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광국원종공신이 책봉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비롯하여 『광국원종공신녹권』에 관해 다루었다는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 당시 서적 문화와 함께 관직이나 신분사회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광국원종공신녹권』을 대상으로 녹권이 공신들에게 반사된 당시의 역사적 사건과 함께 그 사유를 알아보고, 현전하는 녹권의 형태적 특징과 그 편성체계를 살펴보며 녹권에 기재된 원종공신들의 등급을 구분하여 그들의 직함(職銜)과 신분(身分)에 대해 각각으로 분석하여 원종공신의 구체적 분석을 포함한 그 당시 사회상을 알아보도록 한다.

II. 『光國原從功臣錄券』의 頒賜事由 및 受給者

1. 頒賜事由

광국공신(光國功臣)은 조선시대에 종실의 계통을 바로잡는 데 세운 공으로 신하들에게 내린 공

신호(功臣號)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종실의 계통을 바로잡는 것을 종계변무(宗系辨誣)라고 하는데, 조선 건국 이후부터 선조 때까지 200여 년간 명(明)나라에 잘못 기록된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세계(世系)를 시정해달라고 주청한 것이다. 종계변무의 의 과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종계변무(宗系辨誣)의 과정

나라	년	월	일	내용	비고
고려	공양왕2 (1390)	05	01	이성계의 정적이던 윤이(尹彝) · 이초(李初)가 명나라로 도망가서 이성계를 타도하려는 목적으로, 공양왕이 고려 왕실의 후손이 아니라 이성계의 인척이라고 함. 이성계는 고려의 권신 이인임(李仁任)의 후손이라고 고함.	명나라의 『태조실록』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그대로 기록함
조선	태조3 (1394)	04	25	이성계의 종계(宗系)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됨. 명나라가 종계 문제로 태조[이성계]를 무시함. 또한 조선을 복속시키려 함.	양국의 외교문제
		06		명나라 사신 황영기(黃永奇)의 편에 변명주문(辨明奏文)을 지어 사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보냄.	
		01	08	성질사 장온(張溫)의 귀국 복명 속에 명태조의 유훈 중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태종2 (1402)	11		이성계의 종계를 바로잡기 위해 임빈(林彬)을 파견함.	
	태종4 (1404)	03	27	파견했던 이번 등이 종계 정정 등에 관한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돌아옴.	
	중종13 (1518)	04	21	주청사(奏請使) 이계맹(李繼孟)이 『대명회전』에 이성계가 고려의 임금 4명을 시해했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전함.	명나라는 종계를 개정해 주겠다고 했으나 실제 바꾸지는 않았음
		26		『대명회전』에 잘못 기록됨에 대해 의논하고 빨리 주청하여 수정하게 하였음.	
	중종24 (1529)	06	08	『대명회전』이 중찬된다는 소리를 듣고, 예부에 주청해 개정을 요구함.	
	중종34 (1539)	07	21	주청사 권별(權機)을 보내 『대명회전』에 대한 수정을 주청.	
	명종12 (1557)	04	20	종계의 개정을 위해 주청사 조사수(趙士秀)를 파견함.	
	명종18 (1563)	09	30	주청사 김주(金澍) 등이 종계에 대한 주청을 함.	
	선조6 (1573)	02	28	종계변무를 위해 주청사 이후백(李後白), 윤근수(尹根壽)를 보냄.	
	선조14 (1581)	05	01	김계휘(金繼輝)를 변무 주청사로 삼음.	
	선조17 (1584)	05	03	종계 주청사 황정우(黃廷璵) 등이 출발함.	
		11	01	종계변무사 황정우 등이 중국 황제가 『대명회전』을 개정한 전문(全文)을 기록한 것을 가지고 돌아옴.	
	선조21 (1587)	05	02	사은사 유흥(兪泓) 등이 『대명회전』 중 조선이 수록된 한 권을 가지고 옴.	종계가 완전히 개정되어 수록됨
	선조22 (1588)	11	22	성질사 윤근수(尹根壽)가 『대명회전』 전질과 칙서를 받아 돌아옴.	종계변무 완성

고려 말 1390(공양왕 2)년 이성계의 정적이던 윤이(尹彝) · 이초(李初)가 명나라로 도망가서 이성계를 타도하려는 목적으로, 공양왕이 고려 왕실의 후손이 아니고 이성계의 인척이라 한 적이 있다. 이 때 윤이 등은 이들이 공모해 명나라를 치려고 한다면서, 이성계의 가계에 관해 고려의 권신 이인임(李仁任)의 후손이라고 한 일이 있었다. 그 뒤 명나라는 이 이야기를 믿고, 그 내용을 명나라의 『태조실록』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그대로 기록하였다. 조선에서 이러한 종계(宗系)의 기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394(태조 3)년 4월이었다. 이 때 명나라 사신이 와서 조선의 연해민이 해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항의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압송을 요구하는 항의문에 “고려배신이인임지사성계금명단자운운(高麗陪臣李仁任之嗣成桂今名旦者云云)”¹⁾한 것으로부터였다.

조선 태조에 관한 종계오기(宗系誤記)는 표면적으로 명나라와는 무관한 일이었으나 건국 직후의 조선으로서는 왕통의 합법성이나 왕권 확립에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명나라에서는 종계 문제를 계기로 이성계를 무시하고 의심하였으며, 종계오기를 빌미로 조선을 복속시키려고 하였다. 또한 이인임은 우왕 때의 권신이며 이성계의 정적으로, 이성계가 그의 후사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이후 양국 간에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되었다. 조선은 그해 6월 명나라의 사신 황영기(黃永奇)의 귀국 편에 변명주문(辨明奏文)을 지어 사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보냈다. 그 내용은 태조 이성계의 가계 22대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태조 즉위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 밝히면서, 이인임의 불법적인 행위를 상세히 알렸으나 명나라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1402(태종 2)년 1월 성절사 장온(張溫)의 귀국 복명 속에 명태조의 유훈 가운데 조선왕의 가계는 이인임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 지난번의 변명이 혗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곧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당시 명나라는 2대 건문제(建文帝)와 3대 성조(成祖) 사이에 황제위의 계승 문제로 내란 중에 있었으므로 변무(辨謳)의 시기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듬해 4월 고명(誥命)과 인신(印信)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어 10월에 면복(冕服) 등을 받아와 명나라와의 관계가 안정되었다. 그러자 조선은 11월에 사은사 임빈(林彬)을 파견했는데, 그 때에 종계변무의 임무를 겸하도록 하였다. 주청문(奏請文)에는 그동안 명나라와의 사이에 내왕한 문서와 태조의 가계를 자세히 기록하였다. 그리고 태조가 이인임과 같은 이씨가 아님을 밝히기 위해 이인임의 가계까지 상세하게 기록해 추가로 보냈다. 그러나 명나라는 명 태조의 유훈이 『대명회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며 『만력회전(萬曆會典)』 중수본에서 변명 사실을 부기하는데 그쳤다. 종계변무는 이후 근 200년간이나 양국 관계에서 외교 문제가 되었고, 종종 때 반정의 합법성을 강조할 때에도 다시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1518(중종 13)년 주청사(奏請使) 이계맹(李繼孟)이 돌아와 『대명회전』 「조선국조(朝鮮國條)」의 주에 이인임과 그의 아들 단(旦 : 이성계의 이름)이 홍무 6년부터 28년까지 무릇 네 왕을

1) 고려의 신하 이인임의 후손인 성계의 지금의 이름을 단이라 하는 등등.

시해했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중종은 곧 남곤(南袞)·이자(李秕) 등을 보내어 태조의 세계가 이인임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 선세(先世)에 시역(殺逆)한 일이 없다고 밝히고 그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명나라의 무종(武宗)은 이 사실을 수긍하면서도 개정하지 않았다.

그 뒤 1529년에 가절사 유보(柳溥)가 명나라에서 『대명회전』이 중찬되리라는 것을 듣고, 곧 예부에 주청해 이 기회에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1539년에도 주청사 권벌(權機), 1557(명종 12)년에는 호조판서 조사수(趙士秀), 1563년에는 주청사 김주(金澍), 1573(선조 6)년에는 주청사 이후백(李後白)·윤근수(尹根壽), 1575년에는 사은사 홍성민(洪聖民) 등을 보내어 기회 있을 때마다 개정의 주장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대명회전』은 반포되지 않았고, 중찬의 내용도 알 수 없었다. 명나라는 『대명회전』을 중찬할 때 조선 측의 주장을 부록하겠다고 언약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었다. 이어 대사간 이이(李珥)는 국군(國君)이 수무(受誣)를 한 지 200여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를 고치지 못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여 인재를 주청사로 보내어 강력하게 주장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581(선조 14)년에는 김계휘(金繼輝)를 주청사로 보내고 다시 1584년에는 황정육(黃廷璣)을 보냈다. 그리고 황정육이 중찬된 『대명회전』의 수정된 조선 관계 기록의 등본을 가지고 돌아옴으로써 종계변무의 목적이 달성되게 되었다.

1587년에는 주청사 유흥(兪泓)을 명나라에 보내어 이번에는 『대명회전』의 반사(頒賜)를 요청하였다. 명나라의 예부에서는 황제의 친함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다가, 예부상서 심리(沈鯉)의 상주에 의해 명제의 칙서와 함께 중수된 『대명회전』 중에서 조선 관계 부분 한 절을 보냈다. 선조는 이것을 종묘·사직·문묘에 친히 고하였다. 그 뒤 1589년에 성절사 윤근수가 『대명회전』 전부를 받아옴으로써 200년간의 종계변무의 외교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되었다.²⁾

선조는 조선시대에 종실의 계통을 바로잡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을 광국공신과 광국원종공신으로 책봉하였다. 이 과정을 『실록』 기사와 『광국원종공신녹권』을 토대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朝鮮王朝實錄』의 光國功臣 冊封 및 녹권 반사에 관한 내용

年度	朝代	月	日	內容	奉命者
1589	선조22	12	01	광국 훈신을 책록하도록 명하다	
1590	선조23	02	01	광국·평난 두 공신의 녹훈을 명하다	
		08	01	광국공신과 평난공신에게 녹권을 반사하고 대사령을 내린다	
1591	선조24	윤	02	임해군 이진 등을 원종공신으로 삼도록 전지하다	同都承旨奇荅
			03	원종공신의 처우에 대해 전지하다	同都承旨奇荅
		30		광국 도감 낭청이 녹권에는 어보를 찍어 허위의 폐단을 막으라고 청하다	

2) 신명호, 조선의 공신(서울 : 가람기획, 2003), pp.129-136.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
<http://www.encykorea.com/encyweb.dll?TRX?str=20193&ty=2> [인용 2010. 9. 15].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1권 제4호)

선조는 나라를 빛낸 공신이라는 광국공신 중 정공신으로 모두 19명을 책봉하였다. 1등은 3명으로, 윤근수, 황정육, 유홍이었다. 이들은 『대명회전』에 이성계의 종계가 개정되어 실린 것을 조선에 가지고 온 정사였다. 2등 7명, 3등 9명은 종계변무를 위한 사신행렬에 동참했던 부사, 서장관, 통역관, 그리고 주청문 작성에 간여했던 사람들이었다. 광국 정공신으로 책봉된 자들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光國 正功臣 명단

區分	人員數	姓名
1등	3	尹根壽, 黃廷璣, 楠泓
2등	7	洪聖民, 李後白, 尹斗壽, 韓應寅, 尹暹, 尹洞, 洪純彥
3등	9	奇大升, 金澍, 李陽元, 黃琳, 尹卓然, 鄭徹, 李山海, 柳成龍, 崔滉
合計	19	

선조는 1591(선조 24)년 윤3월 2일, 종계변무에 힘쓴 정공신을 도와 크고 작은 공이 있는 사람들 을 원종공신으로 책봉하였다. 선조는 원종공신 책봉과 관련 원종공신 처우에 대해 명하였다. 이렇게 책봉된 원종공신은 모두 872명에 달하였다. 1등원종공신은 137명, 2등원종공신은 136명, 3등원 종공신은 599명이었다. 1등원종공신은 대체적으로 종친(宗親)이나 신분 혹은 품계가 높은 사람들 로 이루어졌고, 2등 및 3등원종공신은 1등보다는 낮은 신분이나 품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신분이 낮은 노비들도 함께 구성되어 있었다. 선조는 2백 년 가까이 노력한 종계변무에 수고와 충성을 다한 사람들을 공신으로 책봉하면서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였다.

2. 受給者

『원종공신녹권』의 앞부분에는 녹권을 받는 대상인 수급자(受給者)의 직함과 성명, 본관을 기재 했다. 이는 녹권 수급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원이다. 이 연구의 대상 자료인 보물 제896-4호로 지정된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수급자는 1등 원종공신으로 책봉된 '권벌(權機)'이다.

권벌(1478~1548)은 본관이 안동으로 자는 중허(仲虛), 호는 충재(冲齋) · 훤정(萱亭) · 송정(松亭)이며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아버지는 성균생원 증영의정 사빈(士彬)이고, 어머니는 주부 윤당(尹塘)의 딸이다. 그는 1496(연산군 2)년 진사에 합격하고, 1507(중종 2)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 후 예문관검열 · 홍문관수찬 · 부교리 · 사간원정언 등을 역임하였다.

그가 1513년 사헌부지평으로 재임할 때, 당시 신윤무(辛允武) · 박영문(朴永文)의 역모를 알고

도 즉시 상변(上變)하지 않은 정막개(鄭莫介)의 당상관계(堂上官階)를 사탈하도록 청하여 직신(直臣)으로 이름을 떨쳤다. 1514년에는 이조정랑에 임명되었고, 그 뒤 호조정랑을 거쳐 영천군수가 되었다. 1517년에 장령을 역임하고, 1518년에는 승정원동부승지·좌승지·도승지와 예문관직제학 등을 거쳐, 1519년 예조참판에 임용되었다. 이때 조광조(趙光祖)를 비롯한 사람들이 왕도정치를 극렬히 주장하자, 기호지역 사립파와 연결되어 훈구파와 사립파 사이를 조정하려고 하였다. 그 후 아버지가 연로하고 풍병(風病)이 있음을 들어 삼척부사를 자청하여 나갔다. 같은 해 11월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연루되어 파직당하고 귀향하여 15년간을 고향에서 지내다가 1533년에 복직되어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에 임명되었고, 밀양부사를 거쳐 한성부좌윤·경상도관찰사·형조참판을 지냈다. 이후 병조참판에 임용되고, 한성부판윤에 올랐으며 1539년 7월 종계변무(宗系辨謫)에 관한 일로 주청사(奏請使)가 되어 동지사 임권(任權)과 함께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2월에 돌아왔다. 이때 광국원종공신으로 책훈되었으며 이후 병조판서·한성부판윤에 임용되었으며, 예조판서를 거쳐 의정부좌참찬에 임용되었다. 1542년 5월 장령이 되었으며, 1544년 정월 다시 의정부좌참찬에 임명되었다. 1545(인종 1)년 5월 의정부우찬성이 되었고, 같은 해 7월 명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원상(院相)에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을사사화(乙巳士禍)가 일어나자 같은 해 8월 이기(李芑)·정순봉(鄭順朋)·허자(許磁)·임백령(林百齡) 등 소윤 윤원형(尹元衡)의 세력이 대윤 윤임(尹任) 세력을 배척하자, 이에 반대하여 윤임·유인숙(柳仁淑)·유관(柳灌) 등을 적극 구하는 계사(啓辭)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에 위사공신(衛社功臣)에 책록되었고, 길원군(吉原君)에 봉해졌으나, 9월 우의정 이기, 우찬성 정순봉 등이 자기들과 논의가 다르다고 반대하여 사훈(削勳)되었고, 10월 사헌부와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파면되었다.

1547년 양재역벽서사건에 연루되어 유배지에서 죽었다. 그는 재직기간 동안 경연시독관(經筵侍讀官)·참찬관(參贊官) 등으로 왕에게 경전을 강론하기도 하였으며, 중종조 조광조·김정국(金正國) 등 기호사립파가 중심이 되어 추진된 개혁정치에 영남 사립파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다. 1567년에는 신원(伸冤)되었고, 이듬해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1588년 삼계서원(三溪書院)에 제향되었으며, 1591(선조 24)년에는 영의정에 추증되었다.³⁾

현존하는 녹권은 광국원종공신 1등에 책봉된 좌찬성 이계맹(李繼孟)과 우찬성 권별, 광국원종공신 3등에 책봉된 한성부판관 유운룡(柳雲龍), 학생 기정현(奇廷獻) 등에게 사급된 자료 4점이 남아 있다.

3)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people.aks.ac.kr>> [인용 2010. 11. 1].

III. 『光國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分析

이 장에서는 『광국원종공신녹권』의 형태적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고, 녹권의 체제를 분석한다. 형태 분석에서는 현존하는 『광국원종공신녹권』을 통해 녹권의 형태적인 특징을 파악해보고, 체제 분석에서는 녹권을 크게 권수(卷首) · 본문(本文) · 권말(卷末)의 3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내용과 함께 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한다.

1. 現存本 現况

국내 · 외 국가도서관을 비롯한 대학도서관의 고서목록을 살펴본 바, 현존하는 『광국원종공신녹권』은 4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현존하는 『광국원종공신녹권』에 기재된 수급자 및 소장처⁴⁾

No.	소장처	수급자	직함	등급	청구기호
1	국립중앙도서관	李繼孟	左贊成	1등	BA2513-458
2	고려대학교	柳雲龍	漢城府判官	3등	貴-320
3	개인 소장	權欽	右贊成	1등	보물 제896-4호
4	개인 소장	奇廷獻	學生	3등	광주유형문화재 제22호

위의 <표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국원종공신녹권』은 그리 많이 현존하여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광국원종공신에 대한 내용이 『실록』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이 녹권을 통해 광국원종공신의 반사사유와 직함 및 성명, 포상규정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어 그 가치가 높다. 녹권의 상태는 잘 보존되어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녹권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수월하였다.

2. 形態 分析

이 『광국원종공신녹권』은 선조 24(1591)년에 금속활자 중 재주갑인자인 경진자(庚辰字)로 인출한 1책(20장)으로 이루어졌다. 경진자는 선조 13(1580)년에 갑인자를 두 번째 주조한 동활자로, 대내에 소장한 갑인자본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자본(字本)으로 하여 선조 13년 정월부터 9개월에 걸쳐 주성한 것이다.⁵⁾ 현존하는 공신녹권 중 경진자로 인출된 녹권은 『광국원종공신녹권』이

4) 이 연구를 위해 현존하는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소장처를 찾아 각 녹권을 조사하여 파악하였다.

5) 천혜봉, 한국금속활자본(서울 : 범우사, 1993), pp.54-58.

유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보물 제896-4호를 기준으로 분석할 결과, 선장(線裝) 형태로 제책이 되었으며, 표제(表題)는 ‘광국원종공신록(光國原從功臣錄)’으로 제첨(題簽)되어 있다. 권수제(卷首題)는 ‘광국원종공신녹권(光國原從功臣錄券)’이라 되어 있다. 이전에 발급된 녹권은 권수제에서 발급기관이었던 ‘이조(吏曹)⁶⁾’로 기재했으나 『광국원종공신녹권』부터는 이 부분에서 차이가 생긴다. 『광국원종공신녹권』의 형태서지사항은 〈표 5〉와 같다.

〈표 5〉 『光國原從功臣錄券』의 書誌事項

光國原從功臣錄券 / 光國功臣都監 編. - 再鑄甲寅字本. - 漢城 : 光國功臣都監, 宣祖 24(1591). 1册(20張) : 四周雙邊, 半廓 26.1 × 18.5cm, 10行17字, 上下內向3 葉花紋魚尾 : 37.6 × 22.6cm.
表題名 : 光國原從功臣錄
印記 : 施命之寶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邊欄)은 사주쌍변(四周雙邊)이고, 반곽(半廓)의 크기는 26.1 × 18.5cm이고 전체 책의 크기는 37.6 × 22.6cm이다. 반엽(半葉)을 기준으로 10행 17자씩 배자되어 있고, 계선(界線)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 중앙의 판심부(版心部)에는 ‘광국원종공신녹권(光國原從功臣錄券)’이라는 판심제가 있으며, 어미(魚尾)는 상하내향3엽화문어미(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사주쌍변(四周雙邊)과 어미의 변화는 이전에 인출(印出)되어 반사된 녹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변란과 계선, 그리고 계선과 어미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며 이를 통해 활자본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인장(印章)은 이전에 「이조지인(吏曹之印)」이 찍혔던 반면 『광국원종공신녹권』에서는 「시명지보(施命之寶)」⁷⁾가 녹권의 수급자(受給者)가 기재된 권수제면(卷首題面), 특전 및 포상규정을 명한 면, 광국공신도감의 구성원들을 표기한 면 등 모두 세 곳에 주인(朱印)되어 있다.

6) 이조(吏曹)는 조선시대 문선(文選) · 훈봉(勳封) · 고과(考課) 등에 관한 일을 관掌하던 관서로 육조(六曹)의 하나이다. 태조 1(1392)년에 문선사(文選司) · 고훈사(考訓司)를 늘려 운영하였고, 태종 5(1405)년에 승녕부(承寧府) · 공안부(恭安府) · 종부시(宗簿寺) · 인녕부(仁寧府) · 상서사(尙瑞司) · 사선서(司善署) · 내시부(內侍府) · 공신도감(功臣都監) · 내시원(內侍院) · 차방(茶房) · 사옹방(司饗房)이 편속되었다. 이조에 공신도감이 편속되어 있음을 통해 이조가 공신도감의 상위 부서임을 알 수 있으며, 주로 이조에서 공신의 책봉을 비롯하여 녹권의 발급을 담당하였던 상위 기관이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7) 「시명지보(施命之寶)」는 조선의 국왕문서용 어보(御寶) 중 하나로, 「시명(施命)」은 『주역(周易)』의 구괘(姤卦)에서 따온 말로, 사람이 하늘 아래에 두루 다니는 것과 같이 군주가 상(象)을 두루 관찰하여 명령을 배포어서 사방(四方)을 교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周易』, 下經44, 姤, “象曰 天下有風姤 后以 施命誥四方.”).

3. 體制 分析

『원종공신녹권』의 체제는 크게 권수(卷首) · 본문(本文) · 권말(卷末)의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광국원종공신녹권』도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각 부분의 구성과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光國原從功臣錄券』의 體制 構成

區分	內容		印章
卷首	卷首題	錄券名	受給者 姓名 위에 御寶(施命之寶)
	受給者	職銜, 姓名	
本文	奉教日 및 奉命者	날짜(공신책봉), 職銜, 姓名	三等功臣 마지막에 御寶(施命之寶)
	傳旨	傳旨 … (책봉사유)	
	等級別功臣	職銜, 姓名	
	奉教日 및 奉命者	날짜(포상 및 특전 시행), 職銜, 姓名	
	傳旨	傳旨 … (등급별 포상규정)	
卷末	功臣都監名 및 都監員	發給機關名, 각 도감원의 職銜 및 姓氏	都監員의 시작부분에 御寶(施命之寶)

* 굵은 글씨는 이전에 발급된 녹권과 차이가 있는 부분임.

권수의 체제는 권수제, 녹권 수급자의 직함과 성명으로 구성되었다. 본문의 체제는 공신 책봉과 관련된 봉교일(奉教日)과 봉명자(奉命者), 녹권의 반사사유 및 경위, 등급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 포상 시행과 관련된 봉교일과 봉명자,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과 이를 시행한 기관으로 이루어졌다. 권말의 체제는 녹권의 발급기관명, 발급기관 구성원의 직함과 성명(姓名)으로 구성되었다.

가. 卷首

『광국원종공신녹권』의 권수 체제는 권수제, 녹권 수급자의 직함과 성명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권수제에는 녹권의 이름인 '광국원종공신녹권'을 기재하였고, 그 다음 행에는 수급자의 직함과 성명을 나타냈다. 이전에 발급된 녹권 직함을 쓸 때에는 겸직(兼職)이나 전직(前職)까지 모두 기재하였으나, 이 녹권에서는 현재의 직함만을 간단히 기입했다. 직함 아래에는 성명을 썼고, 전에 발급된 녹권과는 달리 수급자의 본관은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이 부분에서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있는데, 『좌리원종공신녹권』은 금속활자로 인출된 것이나 수급자의 직함, 성명에 대한 사항은 필사되어 있었으나, 『광국원종공신녹권』은 금속활자로 인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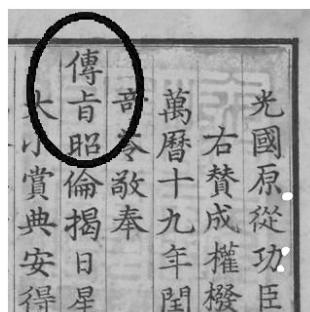
나. 本文

본문에서는 공신 책봉에 관한 명을 받은 사람인 봉명자의 직함과 성명, 공신을 책봉하는 사유의 내용을 담은 전지(傳旨), 등급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 포상 및 특전 시행에 관한 명을 받은 사람의 직함과 성명, 등급별 포상 및 특전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光國原從功臣錄券』의 本文 内容

順序	内容	奉命者
1	萬曆 19(1591)年 閏3月 初2日 이조에 원종공신 책봉을 하라고 명함	同副承旨 奇荅
2	傳旨(공신 책봉 경위 및 사유)	-
3	각 등급별 공신의 직함과 성명 나열	-
4	萬曆 19(1591)年 閏3月 初2日 원종공신에 대한 포상규정 및 특전을 명함 - 吏曹 담당	同副承旨 奇荅

선조 24(1591)년 윤3월 2일, 왕이 이조에 공신을 책봉하라는 명을 받은 사람은 동부승지(同副承旨) 기영(奇荅)⁸⁾이다. 다음 행에는 ‘전지(傳旨)’를 표기한 후, 공신을 책봉하는 사유 및 경위에 대한 내용을 나타냈는데, ‘전지’는 다른 행의 글자보다 한 글자 위에 기재하였다. 이는 왕이 명한 것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표기한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전지 부분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光國原從功臣錄券』의 傳旨 부문

8) 생몰년은 1432-1481년으로,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가구(可久)이며 증좌찬성 화년(和年)의 아들이다. 문종 1(1451)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세조 1(1455)년 12월 좌의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1466년 문과 중시에 급제하고, 예종 즉위(1468)년 10월 동부승지에 발탁되어 곧 남이(南怡)의 옥사를 다스리는 데 공을 세워 익대공신(翊戴功臣) 3등에 책록되고, 가선대부에 올라 계림군(鶴林君)에 봉하여졌다. 그 후 우부승지·좌부승지·도승지를 거쳐 성종 2(1471)년 3월 성종의 즉위를 도운 공으로 다시 좌리공신(佐理功臣) 3등에 책록되고 정현대부(正憲大夫)에 올랐다. 1472년 경상도관찰사를 겸하였고, 1474년 공조판서에 승진, 이어 이조판서가 되었고, 1476년 진하사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1477년 지중추부사가 되었다(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people.aks.ac.kr/index.aks> [인용 2010. 10. 28].).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전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밝은 인륜이 해와 별에 들어 옛 나라가 다시 지어짐에 새로워졌다. 공을 보답함에는 크고 작음이 없어 상을 내리니 어찌 후에 할 수 있겠는가? 이는 거듭 법에 뜻렷하여 사사로운 은혜가 아니다. 13대의 지극한 원통함을 생각하면 실로 천만 년이나 되는 오랜 옛적에 없던 바로 우리나라의 영토가 오랫동안 금수의 처지에 빠졌으니 내 어찌 임금이 되어 즐겁겠는가. 북극성을 향해 항상 정성스럽게 구하여 하늘이 종욕(從欲)⁹⁾을 막지 않았다. 비적(秘籍)은 바로 보이고 숨지 않았다. 전질(全帙)은 마침내 널리 반포되고 남음이 없다. 이는 2-3명 신하들로 말미암아 전후 목숨을 바치는 충성이며 또한 약간의 사람들이 분주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지극히 이들의 아름다움을 돌리기에 부족하여 이에 감히 존호를 받고 말이 없다. 공이 빛남은 하늘에 있고 나는 이미 이에 이르렀으니 경사스럽게 이 명을 받으라. 은혜는 또한 마땅히 위로는 시골에 돌아가 살고 있는 사대부로부터 아래로는 서리(胥吏)나 복예(僕隸)에 이르기까지 진실로 작은 수고와 조금 잘한 일이 있으니 아울러 기록하여 모두 거두지 않음이 없다. 공을 나눔은 중함을 생각하고 가벼움을 생각함이 비록 신하들의 등급이 동일하지 않음이 있다. 귀함도 없고 천함도 없어 힘씀이 가정·나라와 더불어 아름답게 한다. 나는 가상하게 여기니 그를 감히 잊겠는가. 그러므로 이를 가르쳐 보이니 잘 알지어다.’¹⁰⁾

위의 전지의 내용을 통해 광국원종공신은 이성계의 종계가 완전히 개정되어 수록된 『대명회전(大明會典)』 전질을 가지고 온 공로로 책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지 다음 행부터는 등급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을 나열하였다. 1등은 137명, 2등은 136명, 3등은 599명으로 모두 872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직함과 성명이 나열되어 있다. 등급별 공신의 구분 표시는 ‘…等乙良光國原從功臣○等’이라고 나타내어 등급간 구별을 쉽게 하였다. 이와 같은 구별 표시를 『좌리원종공신녹권』에서는 ‘…等乙良原從功臣○等’이라고 하였지만, 『광국원종공신녹권』에서는 ‘광국(光國)’이라는 내용을 넣어 광국원종공신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이 부분을 북개자(墨蓋子)로 해놓아 좀 더 구별하기 쉽게 했다.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의 나열은 뚜렷한 기준이나 순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대체적으로 왕실의 친족이나 고위 관료로부터 시작하여 신분이 낮은 공신으로 나열하였고, 1등공신은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3등공신으로 갈수

9) 천리(天理)대로 다스리는 정치를 말함. 공자가 “나이 70에는 마음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해도 법[天理]을 어기지 않게 된다.”고 한 대로 온 말임.

10) 光國功臣都監 編, 『光國原從功臣錄券』.

昭倫揭日星舊邦維新於再造報功無大小賞典安得以後時茲申彝憲匪出私恩念惟十三代之至寃實是千萬古所未有環東土久陷禽獸予何樂乎爲君向北極恒籲呼天未厭乎從欲秘籍徑示而不隱全帙畢頒而無餘茲由二三臣前後效命之忠亦賴若干人奔走服勞之助至於歸美之不足乃敢受號而無辭功光在天予既至此慶比受命恩亦宜然所以上自鄉士大夫暨夫下至胥吏僕隸苟有微勞與少效無不并錄而俱收分功惟重惟輕雖有等級之不一爲臣無貴無賤勉與家國而同休予用嘉焉其敢忘也故茲教示想宜知悉。

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직함 기술에서는 소속 기관 등을 함께 기재하여 비교적 자세한 직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곳곳에 같은 기관에 소속된 직함끼리 나열된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내시부(內侍府)에 속하는 몇몇의 공신들끼리 기재한 것이다. 또한 성명과 같은 경우는 같은 성(姓)씨에 항렬 돌림자를 쓰는 듯한 성명들이 곳곳에 보였다. 예를 들면 행주(幸州) 기씨(奇氏)의 경우 같은 등급에 한 부분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특별한 규칙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으나 대체로 같은 집안사람끼리 나란히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녹권의 부분은 <표 8>과 <표 9>와 같다.

<표 8> 같은 소속에 속하는 직함의 예

녹권 발췌 부분	司譯院 所屬
韓潤 朴麟 金諭 洪明彦 司譯院前 衛金吉孫 司譯院前 衛奉事	司譯院判官 司譯院副正 司譯院直長 司譯院奉事 司譯院前衛 司譯院前衛
朴麟 金諭 洪明彦 司譯院前 衛金吉孫 司譯院前 衛奉事	申應澍 朴麟禧 洪明彥 韓潤傑 金吉孫 趙安義
司譯院判官 司譯院副正 司譯院直長 司譯院奉事 司譯院前衛 司譯院前衛	申應澍 朴麟禧 洪明彥 韓潤傑 金吉孫 趙安義

<표 9> 같은 성씨의 가족 관계인 예

녹권 발췌 부분	幸州奇氏 關係	
奇生	東部參	奇大升의 兄
廷獻	男小	奇大升의 子
學子	孝閔副	奇大升의 子
生	大學	奇大升의 子
柳生	副大師	奇大升의 婿
相生	掌樂院	奇大升의 弟
奇生	奇學	奇大升의 子
生	學院	奇大升의 子
柳	孟	奇大升의 子
祐	直長	奇小過의 子
學	南重副	奇小過의 子
生	南	奇小過의 子
柳	重副	奇小過의 子
祐	南	未詳
學	重副	奇大升의 孫

선조는 원종공신의 책봉을 명했던 날인 동왕 24(1591)년 윤3월 2일에 원종공신의 처우에 대해 ‘동부승지 기령’에게 전지하였다.¹¹⁾ 이로 인해 각 등급별로 포상규정 및 특전을 정해 이조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명해졌다. 『광국원종공신녹권』에 기재된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은 이전에 반사되었던 『좌익원종공신녹권』, 『좌리원종공신녹권』의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11) 光國功臣都監 編, 『光國原從功臣錄券』.

〈표 10〉 佐翼·佐理·光國原從功臣에 대한 褒賞規程 및 特典 내용 비교

區分	褒賞規程		
	佐翼	佐理	光國
一等功臣	분인 各加一資	各加一資	各加一資
	자손 子孫承蔭有及後世 子孫中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	子孫承蔭有及後世	子孫承蔭有及後世
	부모 封爵	封爵	封爵
二等功臣	분인 各加一資	各加一資	各加一資
	자손 子孫承蔭有及後世 子孫中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 無子孫者兄弟婿姪中從自願加散官一資	子孫承蔭有及後世 子孫中從自願加散官一資 無子孫者兄弟婿姪中從自願加散官一資	子孫承蔭有及後世 子孫中從自願加散官一資 無子孫者兄弟婿姪中從自願加散官一資
	부모 -	-	-
三等功臣	분인 各加一資	各加一資	各加一資
	자손 子孫承蔭有及後世	子孫承蔭有及後世	子孫承蔭有及後世
	부모 -	-	-
各等 通政 以上	子孫兄弟甥姪女婿中一人 從自願加散官一資	子孫兄弟甥姪女婿中一人 從自願加散官一資	子孫兄弟甥姪女婿中一人 從自願加散官一資
物故人	各依本等施行爲旂各追贈一資	各依本等施行爲旂各追贈一資	各依本等施行爲旂各追贈一資
犯罪作散人	並於本品叙用	並於本品敍用	並於本品敍用
在喪及 無故作散人	各加一資敍用	各加一資敍用	各加一資敍用
永不敍用人	許通仕路	許通仕路	許通仕路
職牒收取人	並只還給	並只還給	並只還給
妻子	限品安徐	限品安徐	限品安徐
公私賤口	免賤	免賤	免賤
私賤	公處奴婢 充給	-	-
係干逆黨及因亦賊 公事間事被罪者	-	-	官爵一隸舉行安徐

*굵은 글씨는 각 녹권의 포상규정 및 특전 내용과 다른 부분을 나타냄.

광국원종공신에게 내린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은 1등은 각각 1자급(資級)을 더하여 자손(子孫)이 음직(蔭職)을 이어받게 하고, 유사(宥赦)가 후세(後世)에까지 미치며, 부모(父母)를 봉작(封爵)하게 했다. 2등(原從功臣二等)은 각각 1자급(資級)을 더하여 자손이 음직(蔭職)을 이어받게 하고, 유사(宥赦)가 후세에까지 미치며, 아울러 자손 중에서 자원(自願)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을 더하며, 그 자손이 없는 자는 형제·사위·조카 중에서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을 더하여 준다. 3등(原從功臣三等)은 각각 1자급을 더하여 자손이 음직(蔭職)을 이어받게 하고, 유사(宥赦)가 후세에까지 미치게 한다. 각 등급에서 통훈대부(通訓大夫) 이상인 경우에는 자손·형제·조카·사위 중에서 1인이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을 더하고,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각각 본래의 등급에 의하여 시행하되, 각각 1자급을 추증(追贈)한다. 범죄(犯罪)하여 산인(散人)이 된 경우에는 아울러 본품(本品)에 서용(敍用)하며, 상(喪)중에 있거나 까닭 없이 산인(散

人)이 된 경우에는 각각 1자급을 더하여서 서용한다. 길이 서용하지 아니할 사람인 경우에는 벼슬길[仕路]에 허통(許通)하게 하며, 직첩(職牒)을 거두어들인 사람인 경우에는 모두 되돌려 주고, 청(妾)의 아들인 경우에는 한품(限品)하지 아니하며, 공천(公賤) · 사천(私賤)인 경우에는 모두 천인(賤人)을 면하게 하였다. 또한 역당에 관계되거나 역적의 공사간의 일로 죄를 받은 사람은 벼슬자리를 마련하여 천천히 중용하게 하였다.

좌익원종공신과 좌리원종공신의 포상규정 및 특전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표 11>에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들이다. 1등공신의 자손 부분에서 좌익원종공신은 ‘자손 중에서 자원(自願)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을 더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좌리, 광국원종공신은 이와 같은 내용이 없었다. 또한 좌익원종공신은 사천(私賤)인 경우 주인에게 공천(公賤)으로 보상하게 하였는데 이 항목에 대한 특전이 좌리, 광국원종공신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광국원종공신의 포상규정에는 이전과는 다른 항목이 생겼다. ‘係干逆黨及因亦賊公事間事被罪者 官爵一隸舉行安徐’이라 하여 역당에 관계되거나 역적의 공사간의 일로 죄를 받은 사람은 벼슬자리를 마련하여 천천히 중용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광국원종공신의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이 좌익, 좌리원종공신의 것과 다른 명확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지만, 이전보다는 사회적으로 관용적인 성격이 추가된 것으로 추측된다.

다. 卷末

권말의 첫 행에는 녹권의 발급 · 반사를 주관했던 기관인 광국공신도감(光國功臣都監)이 기재되었는데, 이전에 연구했던 『좌익원종공신녹권』이나 『좌리원종공신녹권』에서는 공신도감의 상위기관이었던 이조(吏曹)가 기재되었던 것에 반해 『광국원종공신녹권』에서는 해당 기관인 ‘광국공신도감’이라고 정확하게 밝혀져 있다. 그 다음 행부터는 그 기관에서 녹권 발급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보았던 관원들의 직함과 성명(姓名)이 기재되었다. 이전 연구대상이었던 『좌익원종공신녹권』과 『좌리원종공신녹권』은 직함과 성씨(姓氏) 및 그들의 수결로 구성되었으나 『광국원종공신녹권』에서는 이름을 정확히 밝히어 그에 따른 수결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광국원종공신녹권』의 발급을 담당했던 관원들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광국공신도감원의 관직명 및 품계

번호	품계 · 관직명	品階	人員數
1	都總管	정2품	1
2	判書	정2품	2
3	都承旨	정3품	1
4	通訓大夫	정3품	1
5	校理	정5품	1
6	正郎	정5품	1
合計			7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광국원종공신녹권』의 발급을 담당했던 관원은 모두 7명이며, 총관 1명 · 판서 2명 · 도승지 1명 · 통훈대부 1명 · 교리 1명 · 정랑 1명 등 6개의 품계 및 관직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품계는 정2품부터 정5품까지 다양한 품계의 관원들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녹권에 기재된 이들의 구체적인 관직과 직함, 성명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광국공신도감원의 관직, 직함 및 성명

번호	관직·직함	姓名	備考
1	堂上輸忠貢誠翼謨修紀光國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輔國崇祿大夫杞城府院君兼知經筵事五衛都摠府都摠管	俞泓	정공신 1등
2	堂上輸忠貢誠翼謨修紀光國功臣輔國宗祿大夫行兵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經筵成均館事長溪府院君	黃廷璣	정공신 1등
3	堂上輸忠貢誠翼謨修紀光國功臣正憲大夫禮曹判書兼同知 經筵春秋館成均館事藝文館提學海平君	尹根壽	정공신 1등
4	堂上輸忠翼謨修紀光國推忠奮義炳義協策平難功臣嘉善大夫行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正清平君	韓應寅	정공신 2등
5	郎廳輸忠翼謨修紀光國功臣通訓大夫行弘文館校理知製 敎兼 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	尹暹	정공신 2등
6	郎廳輸忠翼謨修紀光國功臣朝散大夫行刑曹正郎	尹洞	정공신 2등
7	監校郎廳修城禁火司提檢通訓大夫	李穎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광국원종공신녹권』의 발급을 담당한 관원들의 관직 및 직함, 성명 등이 기재되었다. 또한 광국원종공신에 대한 책봉 및 녹권 발급을 담당했던 관원들은 대부분 광국 정공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광국 정공신이 책봉된 이후, 다시 공신도감이 구성되어 광국원종공신을 책봉하고 녹권을 발급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본문까지와는 달리 권말 부분에서 특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본문까지는 활자, 즉 재주갑인자로 인쇄하였지만 권말 부분은 목판으로 찍어 인출하였다. 이처럼 권말 부분을 목판으로 인쇄한 까닭은 관원의 직함을 전직, 겸직 및 공신호 등의 모든 내용과 함께 성명을 한 행에 기재하고 있어 그 글자를 작고 정교하게 나타내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IV. 『光國原從功臣錄券』의 内容 分析

이 장에서는 선조가 명나라 역사기록에 잘못 기록된 조선 종실계통을 바로잡는 데 크고 작은 공을 세워 책봉된 광국원종공신들을 대상으로 등급별로 그들의 직함과 이를 바탕으로 알아본 신분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3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기재된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을 바탕으로 각각의 인원수를 분석하여 광국원종공신들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1. 等級別 分析

가. 光國原從功臣一等

광국원종공신 1등에 책봉된 사람은 모두 137명으로 이들의 직함을 모두 해아려보면 56개¹²⁾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확인된 직함을 근거로 이들을 품계별로 분류하여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표 13〉 光國原從功臣 1等의 分布現況

品階	職銜	人員數	比率(%)
군, 將	臨海君, 光海君, 信城君, 定遠君, 順和君, 海豐君, 清原尉, 河原君, 河陵君, 豊山君, 興寧君, 文城君, 烏川君, 泰安君	14	10.2
정1품	領議政, 左議政, 贈領議政	12	8.8
종1품	左贊成, 右贊成	3	2.2
정2품	刑曹判書, 右參贊, 左參贊, 禮曹判書	5	3.6
종2품	工曹參判, 大司憲, 同知中樞府事, 尙膳, 領中樞府事, 禮曹參判, 前同知中樞府事, 知中樞府事	12	8.8
정3품	內禁衛, 潭陽府使, 唐恩都正, 大司成, 東萊府使, 扶安都正, 副提學, 司譯院正, 司宰監正, 西川都正, 星州牧使, 寧堤正, 右副承旨, 禮曹參議, 右通禮, 前軍資監正, 益城正, 前行牧使, 前司贍寺正, 典醫監正, 左副承旨, 判校, 左承旨, 濟用監正, 行僉知中樞府事, 花寧都正, 平山府使	35	25.5
종3품	烏山副正, 烏江副正, 丹川副正, 花川副正, 交城副正, 司譯院副正	6	4.4
정4품	西陵守, 蓮城守, 西興守, 修城禁火司提檢, 永原守, 長臨守, 護軍, 豊城守, 豊川守, 豊海守, 花山守	13	9.5
종4품	行副護軍, 前行副護軍, 儀賓府經歷, 副應敎	6	4.4
정5품	工曹正郎, 前兵曹正郎, 禮曹正郎, 行司直, 前禮曹正郎, 前刑曹佐郎, 典簿, 前尚衣院別坐	8	5.8
종5품	彰信校尉, 前穩城判官	2	1.5
정6품	典籍, 工曹佐郎, 司果, 修撰, 司圃	5	3.6
종6품	副司果, 守門將, 司譯院主簿, 前司宰監主簿	4	2.9
정7품	行司正	1	0.8
종7품	-	0	0
정8품	-	0	0
종8품	副司猛, 司譯院奉事	2	1.5
정9품	-	0	0
종9품	講肆習讀, 副司勇, 成均館學官	4	2.9
기타	及第, 保人, 司譯院前銜, 進士	5	3.6
合計		137	100

〈표 13〉을 보면 1등공신에 책봉된 품계 중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품계는 정3품으로 35명에 해당하는 25.5%가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왕의 친족이나 공신들 등에 해당되는 군(君)¹³⁾

12) 여기에서의 직함 56개는 임지(任地)를 제외하고 해아린 개수이다. 이하 2, 3등의 직함의 수 역시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이 14명인 10.2%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다. 정4품 13명의 공신이 9.5%를 차지하고 있다. 즉 정3품, 군, 정4품에 해당하는 공신들이 1등공신의 절반 가까이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국원종공신 1등에는 모두 56개의 직함에 137명의 공신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들 중 인원수가 비교적 많이 기재된 직함만 순서대로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1등원종공신 중 인원수가 비교적 많이 기재된 직함

순위	직함	품계	문/무관	인원수	비율(%)
1	正	정3품	문관	15	10.9
2	君	.	문관	13	9.5
3	守	정4품	문관	10	7.3
4	領議政	정1품	문관	6	4.4
	府事	종2품	문관	6	4.4
	副正	종3품	문관	6	4.4
합계				56	40.9

<표 14>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은 인원이 기재된 직함은 정(正)으로 모두 15명이었고, 이어서 왕실의 종친 및 인척 등 왕실 관련 사람들에게 주어진 칭호였던 군(君)이 13명이었으며, 군(郡)의 우두머리를 이르는 수(守)가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직함에 따른 문·무반(文·武班)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15> 光國原從功臣 1등의 文·武班 現況

區分	人員數	比率(%)
문관	105	76.6
무관	14	10.2
종친 및 인척, 군	14	10.2
기타	4	2.8
합계	137	99.8

총 137명 중에 문관이 105명인 76.6%였고 무관이 14명으로 10.2%였음을 알 수 있다. 문관이 무관보다 더 많아 그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종친 및 인척이나 군(君)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14명인 10.2%로 이들이 1등공신에 많이 책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 본래 군(君)은 종2품부터 정1품까지 분포되어 있으나, 『광국원종공신녹권』에서는 군의 품계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군 및 왕의 친족에 해당하는 공신이 많으므로 분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光國原從功臣二等

광국원종공신 2등에 책봉된 공신은 모두 136명이었으며 공신들의 직함은 61개로 구성되었다. 직함을 기준으로 이를 품계별로 분류하여 분포된 현상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16〉과 같다.

〈표 16〉 光國原從功臣 2等의 分布現況

品階	職銜	人員數	比率(%)
군	昌山君, 西川君	2	1.5
정1품	江原道觀察使, 京畿觀察使, 領議政, 右議政, 左議政, 忠清道觀察使	11	8.1
종1품	右贊成, 左贊成	5	3.7
정2품	工曹判書, 兵曹判書, 禮曹判書, 右參贊, 吏曹判書, 前左參贊, 左參贊, 判尹, 行左參贊, 戶曹判書	16	11.7
종2품	工曹參判, 大司憲, 兵曹參判, 尚膳, 右尹, 吏曹參判, 左尹, 刑曹參判	13	9.6
정3품	兼司僕, 內禁衛, 內贍寺正, 大司諫, 大司成, 都承旨, 兵曹參議, 副提學, 司贍寺正, 司譯院正, 尚醞, 水原府使, 驪州牧使, 禮曹參議, 羽林衛, 前府使, 前右副承旨, 前吏曹參議, 前左承旨, 左副承旨, 執義, 參知, 兼知中樞府事, 判校, 行副提學, 行安州牧使, 行知中樞府事, 行坡州牧使, 刑曹參議, 洪州牧使	36	26.5
종3품	司譯院副正, 尚藥	2	1.5
정4품	應敎, 護軍	4	2.9
종4품	別侍衛, 副護軍, 濟用監僉正, 行副護軍	4	2.9
정5품	兵曹正郎, 司直, 尚衣院別坐, 尚孤, 禮曹正郎, 吏曹正郎, 持平, 刑曹正郎, 弘文館校理	11	8.1
종5품	副校理, 司譯院判官, 兼醫監判官	6	4.4
정6품	司評, 尚洗	2	1.5
종6품	軍資監主簿, 秉節校尉, 副司果, 引儀, 前高山察訪, 正言, 忠贊衛, 惠民署主簿	9	6.6
정7품	迪順副尉	1	0.7
종7품	司譯院直長	2	1.5
정8품	副直長	1	0.7
종8품	權知訓鍊院奉事, 副司猛, 司譯院奉事	3	2.2
정9품	-	0	0
종9품	繕工監監役, 前假引儀	2	1.5
기타	及第, 司譯院前銜	6	4.4
合計		136	100

〈표 1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광국원종공신 2등으로 책봉된 136명 중 36명으로 가장 많이 구성된 품계는 정3품이다. 그 다음으로는 16명으로 약 11.7%를 차지하고 있는 정2품이 많았으며, 종2품은 이보다는 적은 13명인 9.6%를 이루었다. 위의 정3품, 정2품 및 종2품에 해당되는 공신들은 광국원종공신 2등의 절반 정도 구성하고 있었다. 광국원종공신의 직함은 모두 61개로, 이들 중 인원수가 비교적 많이 기재된 직함만 순서대로 분석해보면 〈표 17〉과 같다.

〈표 17〉 2등원종공신 중 인원수가 비교적 많이 기재된 직함

순위	직함	품계	문/무관	인원수	비율(%)
1	參贊	정2품	문관	8	5.9
2	判書	정2품	문관	7	5.1
3	正	정3품	문관	6	4.4
	參判	종2품	문관	6	4.4
5	正郎	정5품	문관	5	3.7
	贊成	종1품	문관	5	3.7
	判官	종5품	문관	5	3.7
합계				42	30.9

〈표 17〉에서 보듯이 8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직함은 의정부(議政府) 소속 관직인 참찬(參贊)이었고, 그 다음은 7명으로 구성된 중앙행정관서의 장관인 판서(判書)였다. 정(正)과 참판(參判)은 각 6명으로 구성되어 3번째로 많은 인원수를 지녔다. 인원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직함은 대체로 정2품부터 종5품 사이의 문반(文班)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들 직함에 따른 문·무반(文·武班)을 분석하면 〈표 18〉과 같다.

〈표 18〉 光國原從功臣 2등의 文·武班 現況

區分	人員數	比率(%)
문관	116	85.3
무관	16	11.7
종친 및 인척, 군	2	1.5
기타	2	1.5
합계	136	100

광국원종공신 2등 136명 중에 문반에 해당되는 공신은 116명으로 2등원종공신 중 대다수가 이에 해당되며, 무관은 16명으로 약 11.7%를 차지하였다. 종친 및 인척, 군(君)에 해당되는 공신은 그 비율이 1등원종공신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2등원종공신으로 책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光國原從功臣三等

광국원종공신 3등에 책봉된 공신들은 모두 599명으로, 이들의 직함 및 관직의 구성은 124개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직함 및 관직 그리고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녹권에 기재된 직함을 기준으로 이들을 품계별로 구분해보면 〈표 19〉와 같다.

〈표 19〉 光國原從功臣 3等의 分布現況

品階	職銜	人員數	比率(%)
군	-	0	0
정1품	黃海道觀察使, 行平安道觀察使	2	0.3
종1품	右贊成	1	0.2
정2품	工曹判書	1	0.2
종2품	同知中樞府事, 北道節度使, 吏曹參判, 前同知中樞府事, 左尹	6	1.0
정3품	兼司僕, 軍器寺正, 吉州牧使, 內禁衛, 內醫院正, 大丘府使, 大司諫, 德源府使, 司譯院正, 尚茶, 瑞興府使, 禮賓寺正, 右副承旨, 右承旨, 右通禮, 吏曹參議, 掌樂院正, 前府使, 前右承旨, 典醫監正, 前行牧使, 前行上護軍, 宗簿寺正, 直提學, 執義, 兼知中樞府事, 忠順衛, 忠義衛, 忠贊衛, 判決事, 判校, 行大司諫, 行春川府使, 刑曹參議, 戶曹參議, 黃州牧使	61	10.2
종3품	內贍寺副正, 多大浦僉使, 大護軍, 滿浦僉使, 司譯院副正, 前繕工監正, 行大護軍	8	1.4
정4품	司藝, 舍人, 尚傳, 掌令, 前舍人, 振威將軍, 行護軍, 護軍	15	2.5
종4품	錦山郡守, 麻田郡守, 別侍衛, 奉常寺僉正, 副護軍, 司譯院僉正, 瑞山郡守, 信川郡守, 龍川郡守, 益山郡守, 掌樂院僉正, 前郡守, 前都摠府經歷, 前萬戶, 前奉常寺僉正, 宗簿寺僉正, 忠勤府經歷, 漢城府庶尹, 行副護軍, 訓鍊院僉正	29	4.8
정5품	果毅校尉, 兵曹正郎, 水庫別坐, 司僕寺判官, 司直, 尚弧, 禮曹正郎, 吏曹正郎, 前兵曹正郎, 前持平, 前弘文館校理, 持平, 直講, 刑曹正郎, 戶曹佐郎, 弘文館校理	26	4.3
종5품	京畿都事, 鏡城判官, 金浦縣令, 羅州提督官, 洛城副令, 都摠府都事, 副校理, 副司直, 司譯院判官, 尚瑞院判官, 新溪縣令, 寧邊判官, 永柔縣令, 前縣令, 漢城府判官, 咸鏡道都事, 行副司直	18	3.0
정6품	兵曹佐郎, 司果, 司鑰, 尚洗, 承議郎, 承訓郎, 勵職郎, 禮曹佐郎, 瓦署別提, 掌苑, 前兵曹佐郎, 前司鑰, 典樂, 前典籍, 正言, 咸鏡北道評事, 戶曹佐郎	28	4.7
종6품	監察, 高靈縣監, 高山縣監, 軍器寺主簿, 軍資監主簿, 唐津縣監, 同福縣監, 明川縣監, 茂長縣監, 乘節校尉, 奉常寺主簿, 副司果, 部將, 司譯院主簿, 宣教郎, 宣務郎, 牙山縣監, 陽城縣監, 燕岐縣監, 永春縣監, 陰竹縣監, 伊川縣監, 引儀, 前軍資監主簿, 前狼川縣監, 前敦寧府主簿, 前銀溪察訪, 前縣監, 節校尉, 堤川縣監, 宗簿寺主簿, 惠民署主簿	59	9.8
정7품	務功郎, 奉敎, 司謁, 司正, 前奉敎	8	1.4
종7품	內醫院直長, 別監, 副司正, 司譯院直長, 尚瑞院直長, 掌樂院直長, 典醫監直長, 前典醫監直長, 濟用監直長, 訓鍊院參軍	44	7.3
정8품	待敎, 勉功郎, 副直長, 前承文院著作	5	0.8
종8품	副司猛, 司譯院奉事, 修義副尉, 承仕郎, 典醫監奉事, 前典獄署奉事, 行副司猛	20	3.3
정9품	司勇, 前承文院正字, 濟用監副奉事	7	1.3
종9품	假引儀, 講肄習讀, 兼引儀, 敬陵參奉, 恭陵參奉, 權知承文院副正字, 內醫院參奉, 敦寧府參奉, 東部參奉, 副司勇, 宣傳官, 前假引儀, 前兼引儀, 展力副尉, 前承文院副正字, 泰陵參奉, 顯陵參奉, 惠民署參奉, 訓鍊院習讀, 福陵參奉	47	7.8
기타	觀象監前銜, 及第, 錄事, 馬醫, 保人, 司譯院生徒, 司譯院前銜, 寫字官, 生員, 書吏, 書房色養馬, 義州官奴, 諸員, 進士, 學生, 惠民署前銜, 火炮匠	214	35.7
	合計	599	100

〈표 19〉에서 알 수 있듯이 3등원종공신에 책봉된 사람들의 직함은 모두 124개였으며, 가장 많은 공신들이 포함된 품계는 기타¹⁴⁾로서 214명으로 35.7%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정3품이 61명으로 10.2%였으며 종6품의 공신이 59명으로 약 9.8%를 이루었다. 이들은 1등 및 2등원종공신과는

14) 진사 등 관직에 아직 나아가지 못했거나 신분이 낮아 품계를 갖지 못한 직함들을 말한다.

다르게 대체적으로 품계가 낮은 직함의 공신들로 이루어졌으며 군(君) 등의 왕의 친족이나 인척인 공신은 3등에 책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광국원종공신은 등급이 높을수록 왕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품계가 대체적으로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등급이 낮아질수록 품계가 낮은 직함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99명의 3등원종공신은 124개의 직함에 따라 인원수가 각각 달랐는데, 이들 중 인원수가 비교적 많이 기재된 직함만 순서대로 정리하면 〈표 20〉과 같다.

〈표 20〉 3등원종공신 중 인원수가 비교적 많이 기재된 직함

순위	직함	품계	문/무관	인원수	비율(%)
1	學生	.	.	122	20.4
2	書吏	.	문관	40	6.7
3	別監	종7품	문관	27	4.5
4	副司果	종6품	무관	24	4.0
5	副司勇	종9품	무관	19	3.2
합계				232	38.8

3등원종공신 중에 〈표 20〉에서 보듯이 성균관·사학(四學)·향교의 생도인 학생(學生)이 122명으로 가장 많이 있었으며, 조선시대의 하급 품외(品外) 관원을 의미하는 서리가 49명으로 약 6.7%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약 4.5%의 공신이 종7품의 별감(別監)이었다. 종6품 행사과(行司果)와 종9품 행사용(行司勇)이 각각 4.0%와 3.2%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모두는 오위에 속하던 직함으로 무관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직함에 따른 문·무반(文·武班)을 분석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光國原從功臣 3등의 文·武班 現況

區分	人員數	比率(%)
문관	307	51.3
무관	123	20.5
종친 및 인척, 군	0	0
기타	169	28.2
합계	599	100

광국원종공신 3등의 문·무반 현황도 1등·2등과 비슷하게 문관이 무관의 직함을 지닌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종친 및 인척, 군 공신들이 1등·2등과 달리 3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노비[奴] 혹은 양인(良人)인 공신들의 비율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身分別 分析

조선 초기의 신분계층은 대체로 양반(兩班) · 중인(中人) · 양인(良人) · 천인(賤人)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신분계층에 대한 여러 연구를 통해 양인 · 천인 두 개의 신분계층,¹⁵⁾ 양반 · 평민(平民) · 천민(賤民) 세 개의 신분계층, 양반 · 중인 · 양인 · 천인 네 개의 신분계층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여러 견해가 있는 것은 각 계층의 개념과 범위가 확실하지 않고, 특히 조선 초기에는 그 신분제도가 사회에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일반적 관점에 따라 조선시대의 신분계층을 네 개¹⁶⁾로 구분하여 각 신분별 분석을 하고자 한다.¹⁷⁾

가. 兩班

양반은 문 · 무관직(文 · 武官職)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백성들을 지배하였던 신분계층으로, 각 등급별 양반의 인원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등에서는 부사과(副司果) 등 32개의 직함¹⁸⁾은 각 1명, 참찬(參贊) 등 9개의 직함¹⁹⁾은 각 2명이었고, 부사(府使) 등 4개의 직함²⁰⁾은 각 3명이었다. 좌의정(左議政) 등 4개의 직함²¹⁾은 각 4명으로 파악되며 부정(副正) 등 3개의 직함²²⁾은 각 6명이고, 수(守)의 직함은 10명이었다. 군(郡)에 해당하는 직함은 13명, 정(正)의 직함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즉 55개의 직함을 가진 132명의 1등공신이 양반이었음이 확인되었다.

2등에서는 가인의(假引儀) 등 26개의 직함²³⁾은 각 1명, 군(君) 등 14개의 직함²⁴⁾은 각 2명이

15) 韓永愚 著, 朝鮮時代 身分史研究(서울 : 집문당, 1997), pp.14-15.

16) 위의 네 개의 신분계층 이외에도 신량역천(身良役賤)이라는 양 · 천중간(良 · 賤中間) 신분계층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여말선초(麗末鮮初)의 신분 재편성 과정에서 국가의 공민(公民)인 양인 계층을 확대시키려는 정책의 하나로, 양인 계층으로 볼 수 있다(李成茂, “朝鮮初期의 身分制度,” 「東亞文化」, 第13輯(1976), p.173).

17) 이 장에서는 『광국원종공신녹권』에 기재된 직함이 자세하여 직합별 신분 분석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직함 중 소속을 제외한 직함명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사역원정(司譯院正)은 정(正)으로 한다.

18)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부사과(副司果) · 참의(參議) ·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 사정(司正) · 판관(判官) · 별좌(別坐) · 제검(提檢) · 대사성(大司成) · 진사(進士) · 봉사(奉事) · 내금위(內禁衛) · 대사헌(大司憲) · 사과(司果) · 수문장(守門將) · 부사맹(副司猛) · 수찬(修撰) · 부사용(副司勇) · 습독(習讀) · 부응교(副應敎) · 승지(承旨) · 급제(及第) · 교위(校尉) · 부제학(副提學) · 위(尉) · 통례(通禮) · 전부(典簿) · 판교(判校) · 전적(典籍) · 전함(前衛) · 사직(司直) · 경력(經歷) · 사포(司圃) 등이다.

19)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참찬(參贊) · 주부(主簿) · 보인(保人) · 참판(參判) · 목사(牧使) · 호군(護軍) · 영의정(領議政) · 좌랑(佐郎) · 학관(學官) 등이다.

20)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부사(府使) · 찬성(贊成) · 부승지(副承旨) · 판서(判書) 등이다.

21)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좌의정(左議政) · 부호군(副護軍) · 도정(都正) · 정랑(正郎) 등이다.

22)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부정(副正) · 영의정(領議政) · 부사(府事) 등이다.

23)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가인의(假引儀) · 감역(監役) · 겸사복(兼司僕) · 교리(校理) · 대사간(大司諫) · 별시위(別侍衛) · 별좌(別坐) · 병절교위(秉節校尉) · 부교리(副校理) · 부사맹(副司猛) · 부정(副正) · 부직장(副直長) · 사직(司直) · 사평(司評) · 우의정(右議政) · 응교(應敎) · 인의(引儀) · 직순부위(迪順副尉) · 정언(正言) · 지령(持

었고 부사(府事) 등 4개의 직함²⁵⁾은 각 3명이었다. 관찰사(觀察使) 등 5개의 직함²⁶⁾은 각 4명, 정랑(正郎) 등 3개의 직함²⁷⁾은 각 5명이었으며 정(正) · 판관(判官) 등 2개의 직함은 6명, 판서(判書) 직함은 7명이었고 참찬(參贊)의 직함은 8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2등공신 가운데 양반은 56개 직함에 128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3등에서는 겸사복(兼司僕) 등 49개의 직함²⁸⁾은 각 1명, 감찰(監察) 등 15개의 직함²⁹⁾은 각 2명, 도사(都事) 등 8개의 직함³⁰⁾은 각 3명이었다. 사알(司謁) 등 8개의 직함³¹⁾은 각 4명, 부사(府使) 등 7개의 직함³²⁾은 각 5명이었고 판관(判官) 등 4개의 직함³³⁾은 각 6명, 봉사(奉事)와 전함(前銜)의 직함은 각 7명으로 이루어졌다. 정랑(正郎) 등 3개의 직함³⁴⁾은 각 8명, 군수(郡守) 직함은 9명, 참봉(參奉) 등 3개의 직함³⁵⁾은 각 10명, 진사(進士)의 직함은 11명이었고 충의위(忠義衛)는 12명, 정(正)은 13명이었다. 현감(縣監)의 직함은 15명, 부사용(副司勇)의 직함은 19명, 부사과(副司果)의 직함은 24명, 학생(學生)이 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즉 3등공신 중 양반은 488명이었고 107개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광국원종공신 872명 중 748명인 약 85.8%가 양반의 신분으로 확인되었고, 등급별 인원

平) · 집의(執義) · 칠방(察訪) · 침정(僉正) · 충찬위(忠贊衛) · 판교(判校) · 판윤(判尹) 등이다.

24)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군(君) · 급제(及第) · 내금위(內禁衛) · 대사헌(大司憲) · 봉사(奉事) · 부사(府使) · 부사과(副司果) · 부승지(副承旨) · 부제학(副提學) · 부호군(副護軍) · 우림위(羽林衛) · 좌의정(左議政) · 주부(主簿) · 직장(直長) 등 14개이다.

25)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부사(府事) · 승지(承旨) · 윤(尹) · 호군(護軍) 등이다.

26)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관찰사(觀察使) · 영의정(領議政) · 목사(牧使) · 전함(前銜) · 참의(參議) 등이다.

27)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정랑(正郎) · 찬성(贊成) · 판관(判官) 등이다.

28)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겸사복(兼司僕) · 과의교위(果毅校尉) · 급제(及第) · 대교(待敎) · 만호(萬戶) · 무공랑(武功郎) · 별시위(別侍衛) · 별제(別提) · 별좌(別坐) · 병절교위(秉節校尉) · 부교리(副校理) · 부령(副令) · 부봉사(副奉事) · 부승지(副承旨) · 부장(部將) · 부직장(副直長) · 사예(司藝) · 사정(司正) · 사직(司直) · 상호군(上護軍) · 생원(生員) · 선교랑(宣敎郎) · 선전관(宣傳官) · 승사랑(承仕郎) · 승의랑(承議郎) · 승훈랑(承訓郎) · 윤(尹) · 인의(引儀) · 장원(掌苑) · 저작(著作) · 전력부위(展力副尉) · 전적(典籍) · 절교위(節校尉) · 절도사(節度使) · 정언(正言) · 정자(正字) · 제독관(提督官) · 직제학(直提學) · 진위장군(振威將軍) · 집의(執義) · 찬성(贊成) · 칠방(察訪) · 참판(參判) · 충순위(忠順衛) · 통례(通禮) · 수결사(手決事) · 판교(判校) · 판서(判書) · 평사(評事) 등이다.

29)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감찰(監察) · 경력(經歷) · 관찰사(觀察使) · 내금위(內禁衛) · 대사간(大司諫) · 대호군(大護軍) · 봉교(奉教) · 부사직(副司直) · 서윤(庶尹) · 수의부위(修義副尉) · 승지(承旨) · 장령(掌令) · 지평(持平) · 참군(參軍) · 침사(僉使) 등이다.

30)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가인의(假引儀) · 교리(校理) · 도사(都事) · 목사(牧使) · 부정(副正) · 사과(司果) · 사인(舍人) · 직강(直講) 등이다.

31)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겸인의(兼引儀) · 녹사(綠事) · 부정자(副正字) · 사알(司謁) · 선무랑(宣務郎) · 참의(參議) · 충찬위(忠贊衛) · 호군(護軍) 등이다.

32)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부사(府使) · 부사정(副司正) · 사약(司鑰) · 사용(司勇) · 습독(習讀) · 전악(典樂) · 현령(縣令) 등이다.

33)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부사(府事) · 부호군(副護軍) · 좌랑(佐郎) · 판관(判官) 등이다.

34)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정랑(正郎) · 주부(主簿) · 침정(僉正) 등이다.

35)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부사맹(副司猛) · 직장(直長) · 참봉(參奉) 등이다.

수를 살펴보니 1등은 55개 직함에 132명 모두가 양반계층이었으며 정 15명, 군 13명, 수 10명 순이었다. 2등은 56개 직함에 128명으로 2등공신의 전체 인원수 중 94.1%에 해당하며 참찬 8명, 판서 7명, 참판 및 정 6명 순이었고, 3등은 107개 직함에 488명으로 3등공신의 전체 인원수 중 80.7%이며 학생 122명, 부사과 24명, 부사용 19명 순으로 구성되었다.

나. 中人

중인은 양반과 평민의 중간에 있던 신분 계급으로 양반을 도와 기술직이나 사무직에 임하였다. 중인을 각 등급별로 그 인원수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등에는 내시부(內侍府)의 상선(尙膳) 직함³⁶⁾이 3명이었다. 2등에는 환관인 상온(尙醞) · 상약(尙藥) · 상세(尙洗)의 직함이 각 1명, 상호(尙弧) 직함이 2명, 상선(尙膳) 3명으로 확인되었다. 3등에는 문서를 정사(精寫)하는 일을 맡아본 사자관(寫字官) 등 4개 직함³⁷⁾에 각 1명, 대전(大殿)이나 액정서에 속하여 왕에게 붓 · 벼루 따위를 공급하던 일을 담당한 서방색(書房色) 등 4개 직함³⁸⁾에 각 2명, 사복시(司僕寺)에 속하여 말의 질병을 치료하던 마의(馬醫), 환관인 상전(尙傳) 직함이 각 4명, 상호(尙弧) 직함이 5명, 별감(別監) 직함이 27명, 서리(書吏)가 40명으로 13개 직함에 92명이었다.

따라서 중인은 광국원종공신 872명 중 약 11.8%인 103명이었고, 등급별 인원수를 확인해보니 1등에서는 3명이 있었고, 2등에서는 2등공신 중 약 5.9%인 8명에 해당한다. 3등에서는 3등공신 599명 중 15.4%에 해당하는 92명이 중인 신분이었다.

다. 良人

양인은 양반과 천인의 중간 신분으로 납세와 군역의 의무가 있는 일반 백성들을 의미하며, 각 등급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등에서는 군사비 충당을 위하여 정군(正軍)에게 떨린 경제적 보조자인 보인(保人) 직함이 2명이 있었다. 2등에서는 양인의 신분을 가진 공신을 찾아볼 수 없었다. 3등에서는 화포장(火砲匠) 직함에 2명, 사복시(司僕寺)의 하급 관리로서 직접 말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양마(養馬) 직함에 3명, 보인(保人) 직함에 6명으로 모두 3개의 직함에 11명이었다. 이상과 같이 광국원종공신 872명 중 13명에 해당하는 약 1.5%의 적은 인원만이 양인 계층이었다.

36) 장희홍, 朝鮮時代 宦官 研究(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2004), pp.53-54.

“환관의 신분은 양인이나 양반의 본래 신분을 유지하지만 직역에 있어서 품계를 받기 때문에 중인으로 대우받는 것이었다.”

37) 이에 속하는 직함은 사자관(寫字官) · 여직랑(勵職郎) · 제원(諸員) · 생도(生徒) 등이다.

38) 예이 속하는 직함은 서방색(書房色) · 면공랑(勉功郎) · 상다(尙茶) · 상세(尙洗) 등이다.

라. 賤人

천인은 가장 낮은 신분에 속하던 계층으로 당시 천역(賤役)이던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차취와 천대를 받던 노비, 백정, 장인바치 등을 이른다. 이들의 각 등급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등과 2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고, 3등에서만 의주관노(義州官奴)의 직함에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광국원종공신 872명 중 약 0.9%인 8명이 천인 신분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양반·중인·양인·천인 등의 4개의 신분계층으로 나누어 각 등급별 인원수를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光國原從功臣 중 身分別 人員數

區分		人員數		比率
兩班	1等	132	748	85.8
	2等	128		
	3等	488		
中人	1等	3	103	11.8
	2等	8		
	3等	92		
良人	1等	2	13	1.5
	2等	0		
	3等	11		
賤人	1等	0	8	0.9
	2等	0		
	3等	8		
合計		872	100	

〈표 22〉와 같이 『광국원종공신녹권』에 기재된 직함을 4개의 신분으로 나누어 인원수를 분석한 결과, 양반이 748명, 중인이 103명, 천인이 13명, 양인이 8명 순으로 양반의 인원수가 전체 인원수의 약 85.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다시 각 등급별로 신분을 구분하여 그 인원수를 분석해본 결과 다음의 〈표 23〉과 같다.

〈표 23〉 等級別 身分 및 인원수

	1等	2等	3等	合計
兩班	132	128	488	748
中人	3	8	92	103
良人	2	0	11	13
賤人	0	0	8	8
合計	137	136	599	872

〈표 23〉과 같이 1등공신 137명 중 양반 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인 3명, 양인 2명, 천인은 없었다. 2등공신 136명 가운데 양반은 128명, 중인 8명 순이었으며 양인과 천인은 없었다. 3등공신 599명 중 양반은 488명이었고 중인 92명, 양인 11명, 천인은 8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로 보아 양반 신분이 가장 많았고, 신분에 제약 없이 광국원종공신으로 책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V. 結 論

이 연구는 선조 24(1591)년 종계변무에 힘써 광국원종공신에게 발급된 『광국원종공신녹권』을 대상으로 문헌상의 기록과 현존하는 실물자료를 조사하여 녹권의 반사사유를 비롯하여 형태·체제·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국원종공신녹권』은 선조가 약 200년간 명(明)나라에 잘못 기록된 태조 이성계의 종계(宗系)에 대한 개록(改錄)에 힘써 공을 세운 신하들 872명(1등 137명, 2등 136명, 3등 599명)을 원종공신으로 책봉한 후 그들에게 반사한 공신 증명서이다.

둘째, 『광국원종공신녹권』은 현재 조사된 4곳의 소장처에 각 1책씩 모두 4책이 전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녹권의 보존 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셋째, 『광국원종공신녹권』은 재주감인자로 인출한 금속활자본 1책으로 광국공신도감에서 발급하였으며, 사주쌍변, 상하내향3엽화문어미(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이전에 반사된 녹권들과는 다른 형태이다. ‘시명지보’의 인장이 권수제면, 포상 규정 및 특전, 광국공신도감의 구성원을 나타내는 부분의 3곳에 주인(朱印)되었다.

넷째,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체제는 크게 권수·본문·권말의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권수는 녹권의 발급기관과 수급자로 이루어져 있고, 본문은 봉명일·봉명자, 반사사유, 등급별 공신의 직함 및 성명,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권말은 녹권 발급에 관여한 관원들의 직함과 성명 등을 담고 있다. 녹권의 체제와 그에 따른 내용은 이전에 발급된 『좌익원종공신녹권』 및 『좌리원종공신녹권』과 차이가 부분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현존본 녹권의 수급자는 이계맹(李繼孟), 유운룡(柳雲龍), 권별(權機), 기정현(奇廷獻)이었다.

다섯째, 광국원종공신으로 책봉된 사람들은 모두 872명으로 3등급으로 구분되어 『광국원종공신녹권』에 기재되었다. 이들의 직함을 분석한 결과, 1등원종공신은 56개의 직함에 모두 137명이며 그 품계에 따라 정3품은 35명, 군(君)에 해당하는 14명, 정4품은 13명 순으로 기재되었다. 직함별 인원수는 정(正)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이 13명, 수(守)가 10명이었다. 2등원종공신은 61개의 직함에 모두 136명이었고 그 품계에 따라 정3품이 36명, 정2품이 16명이었으며 종2품이 13명

순으로 많았다. 직함별 인원수는 정2품 참찬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판서 7명과 정과 참판이 각 6명 기재되었다. 3등원종공신은 124개의 직함에 모두 599명이었으며 학생 등이 214명으로 많은 공신들이 구성되었고 정3품에 해당되는 공신은 61명이었다. 직함별 인원수는 학생이 122명, 품계가 낮은 서리가 40명, 별감 27명의 순으로 많이 차지하였다. 광국원종공신의 직함은 모두 354개였으며 학생(學生)은 122명, 서리(書吏)가 40명이었고 별감(別監)·부사과(副司果)가 각 27명 순으로 인원수가 많았다. 또한 1·3등의 원종공신 중에서는 노비[奴]나 양인 등을 찾아볼 수 있어서 신분의 차별 없이 공신 책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광국원종공신녹권』에 기재된 공신들의 직함을 기준으로 그들의 신분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1등원종공신은 양반 132명, 중인 3명, 양인 2명이었고, 2등원종공신은 양반 128명, 중인 8명이었다. 3등은 양반 488명, 중인 92명, 양인 11명, 천인 8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각 등급별 신분은 양반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공신으로 책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녹권의 발급 대상자는 양반뿐 아니라 중인, 양인 그리고 신분이 낮아 천대를 받던 천인에게까지 포상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원종공신의 책봉에 관한 사실을 조사·정리함으로써 조선 공신 인명을 집대성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공신 녹훈 사실을 토대로 당시 신분사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일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古典資料

『經國大典』.

『光國原從功臣錄券』.

『國朝人物考』.

『朝鮮王朝實錄』.

『佐翼原從功臣錄券』.

『佐理原從功臣錄券』.

『沖齋先生文集』.

2. 單行本

신명호. 조선의 공신들. 서울 : 가람기획, 2002.

- 李成茂. 朝鮮兩班社會研究. 서울 : 一潮閣, 1995.
- 千惠奉. 한국금속활자본. 서울 : 범우사, 1993.
- 崔承熙. 朝鮮後期 社會身分史研究. 서울 : 지식산업사, 2004.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韓永愚. 朝鮮時代 身分史研究. 서울 : 집문당, 1997.
- 幸州奇氏大同譜所. 幸州奇氏大同譜. 고양 : 幸州奇氏大同譜所,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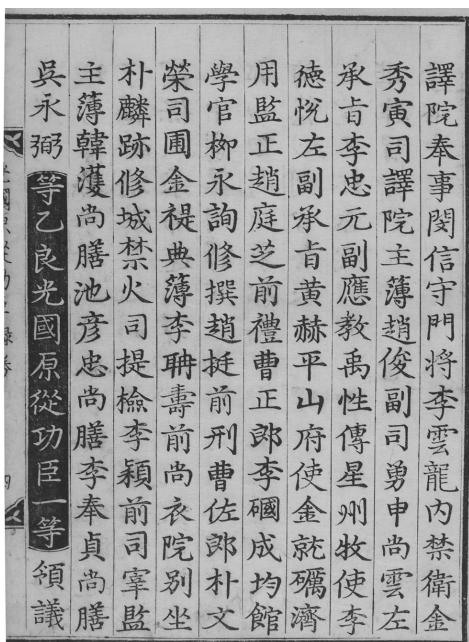
3. 論文

- 노기준. “振武原從功臣錄券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39輯(2008. 06), pp.169-200.
- 林基榮. 壬辰倭亂 直後 賦給된 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현정보학과, 2002.
- 朴文烈. “月川君 金吉通 純誠佐理功臣錄券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31輯(2005. 09), pp.5-32.
- 박문열, 김동환. “光國志慶錄의 校勘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38輯(2007. 12), pp.69-101.
- 성인근. 조선시대 印章 研究.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사학/고고학 전공, 2008.
- 송일기, 진나영. “佐理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4호(2009. 12), pp.427-456.
- _____. “佐翼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한국문현정보학회지, 제42권, 제4호(2008. 12), pp.391-415.
- 李成茂. “朝鮮前期의 身分制度.” 東亞文化, 第13輯(1976. 12), pp.173-191.
- 장희홍. 朝鮮時代 宦官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2004.
- 전종섭. 朝鮮 成宗朝 佐理功臣에 關한 一考察.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1979.
- 鄭杜熙. “朝鮮 世祖-成宗期의 功臣研究.” 震壇學報, 51號(1981. 12), pp.131-181.
- 秦奈伶. 朝鮮時代에 刊行된 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 정보학과,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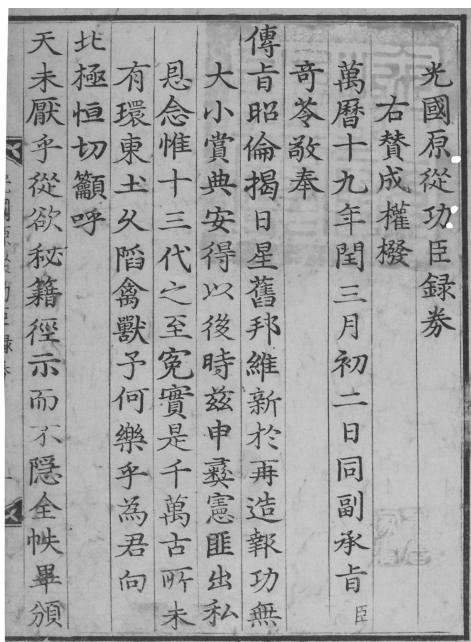
4. Web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해제. <<http://kyuganggak.snu.ac.kr/>> [인용 2009. 5. 9].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www.encykorea.com/encyweb.dll?TRX?str=20193&>> [인용 2010. 9. 15].
-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jsp>> [인용 2009. 6.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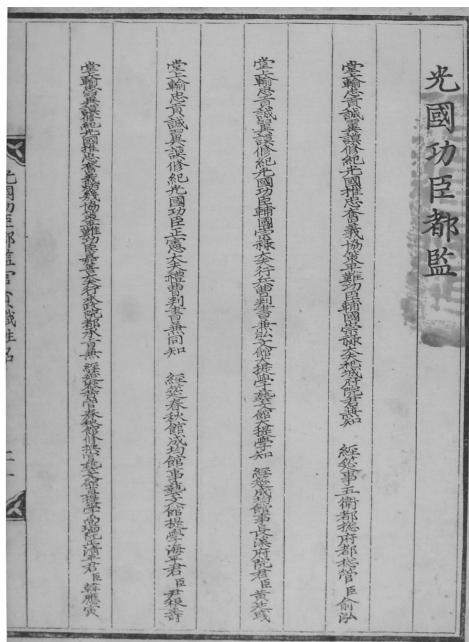
〈附錄〉 光國原從功臣錄券의 書影(보물 제896-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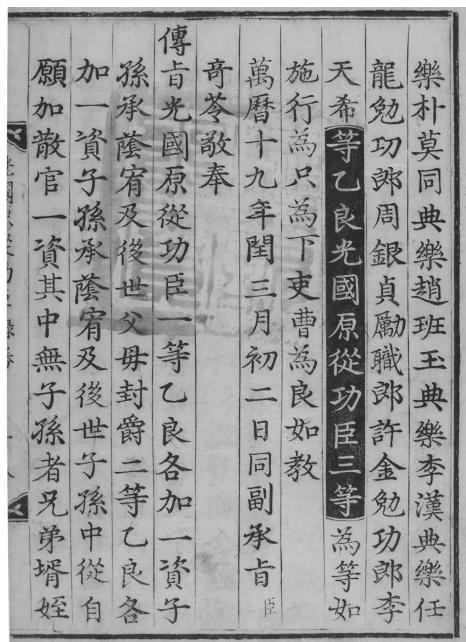
〈등급이 바뀌는 면〉



〈권수제면〉



〈녹권 간행 담당관원의 직함과 성명의 면〉



〈포상규정 및 특전이 시작되는 면〉